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과	1

(2015. 5. 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 례 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28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월)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844호(2014.11.19)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 「지방공기업법」 제12844호(2014.11.19)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 동(同)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안 제2조)
-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다. 성과계약서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10조)
- 라.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마.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3조)

[검토의견]

- 동(同)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마포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15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함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 지방의회 추천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고
-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긴급한 경우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사항에 관하여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 체결하고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기간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 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동(同)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민법, 상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설립 절차 및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적용할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4년 9월 25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마포구가 출자하

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15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2.~ 4.1.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4. 3. 24.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을 정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을 시달한 바, 2015. 5월 현재 서울시 성동구외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출연기관 이라고 함은 마포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뜻하는 출연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또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지방의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은 3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법조계 등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운영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 할 대상으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의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경영평가단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선정되어 경영평가를 할 수 없도록 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두는 등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同)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센터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기간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감사결과가 통보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권고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구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 실시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 실시계획서는 경영진단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역량,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을 참고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

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이 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에 2개 이상의 기관이나 법인에게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출자·출연 관련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연번	자치구	조례 제정	비고
1	서울시 성동구	○	
2	서울시 타 자치구	×	
3	충남	○	
4	충남 당진시	○	
5	전북 전주시	○	
6	전북 진안군	○	
7	전북 임실군	○	
8	전남	○	
9	전남 나주시	○	
10	경북	○	
11	경북 경주시	○	
12	경북 영주시	○	
13	경북 울릉군	○	
14	경남	○	
15	경남 진주시	○	
16	경남 통영시	○	
17	강원	○	
18	강원 춘천시	○	
19	강원 원주시	○	
20	강원 강릉시	○	
21	강원 동해시	○	
22	강원 삼척시	○	
23	강원 홍천군	○	
24	강원 정선군	○	
25	강원 철원군	○	
26	강원 화천군	○	
27	충북	○	
28	충북 음성군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출연 기관 502개, 출자 기관 59개를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 출연기관: 502개

구 분	기 관 명
서울	본청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시·군·구 (종로구)종로문화재단 / (중구)중구문화재단,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성북구)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 (노원구)노원교육복지재단 (은평구)은평구민장학재단 / (마포구)재단법인마포문화재단,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양천구)양천사랑복지재단 / (강서구)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구로구)구로문화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금천구)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 (영등포구)영등포문화재단 (동작구)동작복지재단 / (서초구)서초다산장학재단,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강남구)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 (송파구)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부산	본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문화재단,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의료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영화의전당
	시·군·구 (중구)중구장학회 / (서구)부산서구장학회 / (영도구)행복영도장학회 (부산진구)부산진구장학회 / (동래구)동래장학회 / (북구)부산북구장학회 (강서구)부산강서구장학회 / (수영구)수영구장학재단 / (사상구)부산사상구장학회
대구	본청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재단법인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시·군·구 (중구)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 (동구)동구교육발전장학회, 동구문화재단 (서구)재단법인 서구장학회 / (북구)대구북구청소년회관 (수성구)수성문화재단,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달서구)달서인재육성재단, 달서문화재단 / (달성군)달성장학재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구 분	기 관 명	
인천	본청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문화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시군구	(중구)재단법인 중구 월드 장학회 / (부평구)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서구)재단법인서동이장학회
광주	본청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디자인센터,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도장학회,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테크노파크
대전	본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복지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서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 (유성구)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울산	본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시군구	(남구)고래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 (북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 (울주군)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
세종	본청	(재)세종특별자치시 장학회
경기	본청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복지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영어마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시·군·구	(수원시)수원사랑장학재단,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재)수원FC,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문화재단 (성남시)성남시장학회,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의정부시민장학회, 의정부예술의전당 (안양시)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시,군포시,의왕시)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부천시)부천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장학재단 (광명시)광명시인재육성재단,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평택시)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애향장학회,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안산시)에버그린21,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안산문화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고양시)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과천시)과천시애향장학회,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과천축제 (오산시)오산문화재단, 애향장학재단 / (시흥시)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재)시흥산업진흥원 (군포시)군포사랑장학회, (재)군포문화재단 / (의왕시)의왕시인재육성재단 (하남시)하남시민장학회,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용인시시민장학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구 분		기 관 명
		(파주시)파주시행복장학회 / (이천시)이천시민장학회 / (안성시)안성시민장학회 (김포시)김포시민장학회,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화성시)화성시복지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문화재단 (광주시)광주시민장학회 / (양주시)양주시희망장학재단 / (포천시)포천시인재장학재단 (여주시)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 (양평군)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세미원
강원	본청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인재육성재단,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발전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강원도립극단,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시·군·구	(춘천시)춘천시문화재단,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시)원주문화재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릉시)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문화재단 (태백시)태백시복지재단,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삼척시)삼척향토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 (홍천군)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횡성군)횡성인재육성장학회 / (영월군)영월장학회,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평창군)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장학회 (정선군)정선장학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철원군)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화천군)(재)나라 / (인제군)인제군문화재단 (고성군)고성향토장학회 / (양양군)(재)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충북	본청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인재 양성재단,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시·군·구	(청주시)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복지재단 (충주시)충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제천시)제천시인재육성재단,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보은군)보은군민장학회 / (옥천군)옥천군장학회 / (영동군)영동군민장학회 (증평군)증평군민장학회, 증평복지재단 / (괴산군)괴산군민장학회 (음성군)음성장학회 / (단양군)단양장학회,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충남	본청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경제진흥 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 원, 홍성의료원, 충남테크노파크,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시·군·구	(천안시)천안사랑장학재단, 천안시축구단, 천안문화재단 (공주시)공주시한마음장학회 / (보령시)재단법인만세보령장학회,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아산시)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미래장학회 (서산시)서산시복지재단, 서산인재육성재단 / (논산시)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 계룡시애향장학회 (당진시)당진문화재단, 당진시복지재단, 당진장학회 (금산군)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부여군)부여군굿뜨래장학회, 백제고도문화재단 (청양군)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 (홍성군)홍성사랑장학회,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예산군)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예산사랑장학회 / (태안군)태안군사랑장학회
전북	본청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
	시·군·구	(전주시)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문화재단, 전주생물소재연구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군산시)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 (익산시)익산문화재단, 익산사랑장학재단 (정읍시)정읍시민장학재단 / (남원시)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 / (완주군)완주군인재육성재단 (진안군)진안홍삼연구소, 진안사랑장학재단 (무주군)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 (장수군)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임실군)임실군애향장학회,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임실치즈테마파크 (순창군)순창군 옥천장학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고창군)고창군장학재단, 고창북분자연연구소 / (부안군)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전남	본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전남발전 연구원, 남도장학회,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전남여성플라자,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전남복지재단
	시·군·구	(목포시)목포시의료원, 목포복지재단, 목포장학재단, 목포문화재단,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재)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순천시)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재단,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나주시)나주교육진흥재단,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광양시)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사랑나눔복지재단 (담양군)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 / (재)담양장학회 (보성군)보성군장학재단 / (화순군)재단법인화순장학회 (장흥군)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강진군)강진군민장학재단 / (영암군)영암군 문화재단, (재)영암군민장학회 (무안군)재단법인 무안군승달장학회 / (장성군)장성장학회 (완도군)장보고장학회,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 (진도군)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신안군)1004섬 신안장학회재단, (재)천사(1004)의섬 신안복지재단
경북	본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 문화재단연구원, 재단법인문화엑스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행복재단,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장학회, 독도재단,

구 분	기 관 명	
	시·군·구	<p>경북농민사관학교, 새마을세계화재단,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p> <p>(포항시)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장학회</p> <p>(경주시)(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문화재단, 경주시장학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p> <p>(김천시)재단법인김천시인재양성재단 / (구미시)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장학재단</p> <p>(영주시)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p> <p>(영천시)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영천시장학회</p> <p>(상주시)(재)상주시장학회 / (문경시)(재)문경시장학회</p> <p>(경산시)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산시장학회</p> <p>(청송군)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청송문화관광재단</p> <p>(영양군)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p> <p>(청도군)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p> <p>(성주군)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p> <p>(칠곡군)재단법인호이장학회</p> <p>(예천군)재단법인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예천군민장학회</p> <p>(울진군)울진군의료원, 울진군장학재단</p>
경남	시·군·구	<p>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p> <p>(창원시)창원문화재단 / (진주시)(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p> <p>(통영시)통영국제음악재단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p> <p>(사천시)사천문화재단,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p> <p>(김해시)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김해문화재단, (재)김해시복지재단</p> <p>(밀양시)밀양시민장학재단 / (거제시)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p> <p>(양산시)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 (함안군)재단법인함안군장학재단</p> <p>(창녕군)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p> <p>(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p> <p>(남해군)남해마늘연구소(재) / (하동군)하동군장학재단, 하동녹차연구소</p> <p>(산청군)산청한방약초연구소 / (거창군)거창군 장학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p>
제주	본청	<p>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p>

□ 출자기관: 59개

관리주체		기관명
서울	본청	서울관광마케팅(주)
부산	본청	(주)백스코, 아시아드CC(주)
대구	본청	(주)엑스코
인천	본청	인천유시티(주), (주)인천투자펀드
	시군구	(계양구)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광주	본청	한국씨이에스(주)
경기	본청	(주)킨텍스
	시군구	(가평군)자나라인(주) / (안산시)안산도시개발(주)
강원	본청	(주)강원심층수
	시군구	(춘천시)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 (원주시)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 (삼척시)블랙밸리컨트리클럽 / (영월군)영월에너지스테이션 / (인제군)주아름다운인제관광
충북	시군구	(청주시)주청주테크노폴리스 / (충주시)충주메가폴리스(주) / (증평군)증평이산업단지개발(주) / (괴산군)괴산대제산업단지(주) / (음성군)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주), 오선일반산업단지(주)
충남	시군구	(보령시)주대천리조트 / (논산시)농업회사법인(주)동부팜 / (홍성군)주홍주미트
전북	시군구	(김제시)지앤아이(주) / (순창군)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 농업회사법인한국절임(주) / (고창군)농업회사법인 고창황토배기유통(주)
전남	시군구	(고흥군)농업회사법인고흥군유통(주) / (화순군)화순농특산물유통(주) / (영광군)(주)탑글로리, 농업회사법인영광군유통(주) / (완도군)완도전복(주), 화신산업개발(주) / (진도군)주진도청정푸드밸리 / (신안군)농업회사법인신안그린유통(주) / (화순군)농업회사법인 화순한약재유통(주)
경북	본청	경북통상(주)
	시군구	(포항시)포항테크노밸리AMC(주), 포항테크노밸리PFV(주) / (경주시)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신경주지역개발(주) / (울진군)주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주울진로하스코리아
경남	본청	가온소프트(주), 주경남무역
	시군구	(창원시)마산해양신도시(주) / (진주시)진주금형산단개발(주) / (김해시)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주김해테크노밸리 / (거제시)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주) / (의령군)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 (합천군)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제주	본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인(주)